2023년도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3년 9월 14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신 성 환 위 원

박 춘 섭 위 원

장 용 성 위 원

유 상 대 위 원(부총재)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민 좌 홍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이 종 렬 부총재보

김 웅 부총재보 채 병 득 부총재보

이 재 원 경제연구원장 최 창 호 조사국장

김 인 구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박 종 우 금융시장국장 오 금 화 국제국장

권 민 수 외자운용원장 민 준 규 법규제도실장

최 용 훈 금융통화위원회실장 허 현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36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안)>

-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위원 간 사전 협의 결과 보고서의 구성체계를 지난 6월 보고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최근 정책여건 변화와 정책수행 상황이 충실히 드러나도록 작성하기로 하였음. 특히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 하방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전개상황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만큼 집필대상 기간 중의 정책결정에 대한 배경과 논거를 충실히 설명하기로 하였음. 구체적으로 주요 고려사항 등을 통해 향후 물가 및 성장경로, 가계부채 상황,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등 불확실성 요인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였음. 한편, 최근 회사채 발행이 순상환 기조로 전환된 점을 감안하여 회사채 시장 상황을 회사채 투자수요와 기업의 발행유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였음. 아울러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일반대중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로 하였음. 이 밖에도 통화정책의 금융불균형 대응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국내외 정책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최근의 금융불균형 상황에 대해 점검하기로 하였음.

다음으로 9월 7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년 1/4분기 중 가계부채 비율 하락과 관련하여 신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보험사 약관대출이 가계신용 통계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거시건전성정책 기조를 지수로 시산할 때, DSR 규제를 포함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어서 일부 위원은 유동성조절 필요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가 확대된 배경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설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이용 은행에 대한 낙인 효과를 완화한다는 표현이 일반대중에게 부정적 선입견을 줄 수 있어 보다 쉬운 표현으로 서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과 관련하여 그 요인도 함께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임시·일용직 임금이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급여가 줄 어들었다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시간당 임금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안)(생략)